

# 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7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7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8년 7월 10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시균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. 6. 24일 제정·운영해왔으나,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검토결과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고, 법률에 따른 설치 의무규정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운용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,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

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른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일반회계로 귀속된다.